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
대한 수정안 대비표

| 개정안 | 수정안 |
|--|--|
| <p>제14조의 2(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 ~ ⑥ (생략) <u>< 신설 ></u> ⑦ (생략)</p> | <p>제14조의 2(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 <u>⑦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</u> ⑧ (개정안의 제⑦항과 같음)</p> |